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2. 15(수) 10:00

제24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94호

나. 제 출 자 : 정순기 의원, 고영찬 의원,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
엄셋별 의원, 고성미 의원

다. 제출일자 : 2023. 2. 6.

라. 회부일자 : 2023. 2. 6.

2. 제안이유

우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가 제1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로 변경함(안 제4조)

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함(안 제5조)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u>11월 18일</u>에 집회한다.</p>	<p>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11월 23일</u>-----.</p>
<p>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u>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u> <u>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u> 심의·의결한다.</p>	<p>제5조(심의) ① ----- ----- ----- ---- <u>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그</u> --- -----.</p> <p>② -----<u>법 제142조</u>----- ----- ----- -----.</p>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정례회의 집회일과 정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4조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11월 18일” 에서 “11월 23일” 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 에서 “제1차 정례회” 로 변경하는 것임.

- 이에 각 정례회별 심의안건에 맞는 집회일을 반영함으로써 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법령의 근거규정 및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의회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관련 법령 1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53조(정례회)

-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34호, 2022. 1. 1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4.08., 2015.3.2., 2022.1.12.>

제2조(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3.2., 2021.3.18.>

제3조(회기)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3.2., 2021.3.18, 2022.1.12.>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2.1.12.>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8.04.08, 2012.12.31., 2015.3.2., 2022.1.1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15.3.2.>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8일에 집회한다.<개정 2021.3.18.>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04.08., 2015.3.2., 2021.3.18, 2021.1.12.>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08.04.08., 2015.3.2., 2021.3.18., 2022.1.12.>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8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호, 202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4호, 2022.1.12.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